

ACI Issue Report

핵심감사사항 현황과 감사위원회 역할

– 수익 인식과 손상 검토를 중심으로

October 2024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핵심감사사항 현황과 감사위원회 역할

– 수익 인식과 손상 검토를 중심으로

ACI Issue Report | October 2024

Contact us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김민규

부대표 (ACI 리더)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ACI 부리더)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김다슬

선임연구원

T. 02-2112-3305

E. daseulki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I. 핵심감사제도	
1. 핵심감사제란?	7
2. 핵심감사제도에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8
3. 핵심감사사항 선정 시 외부감사인 고려사항	8
4. 핵심감사사항 선정 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8
5. 2023년 KOSPI200 상장회사의 핵심감사사항 현황	9
II. 주요 핵심감사사항 분석	
1. 수익 인식	10
2. 손상 검토	17
III.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참고사항	
1. 핵심감사사항과 내부통제	22
2. 회계이슈 중점점검항목	22
IV. 별첨	
1. 조사대상	23
2. 모범사례	24

Executive Summary

핵심감사사항 현황과 감사위원회 역할

핵심감사사항 (KAM: Key Audit Matters)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



핵심감사제도의 목적

외부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 감사 중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하고 그 사유와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유용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

핵심감사제도에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01. 감사 계획

02. 감사 수행

03. 감사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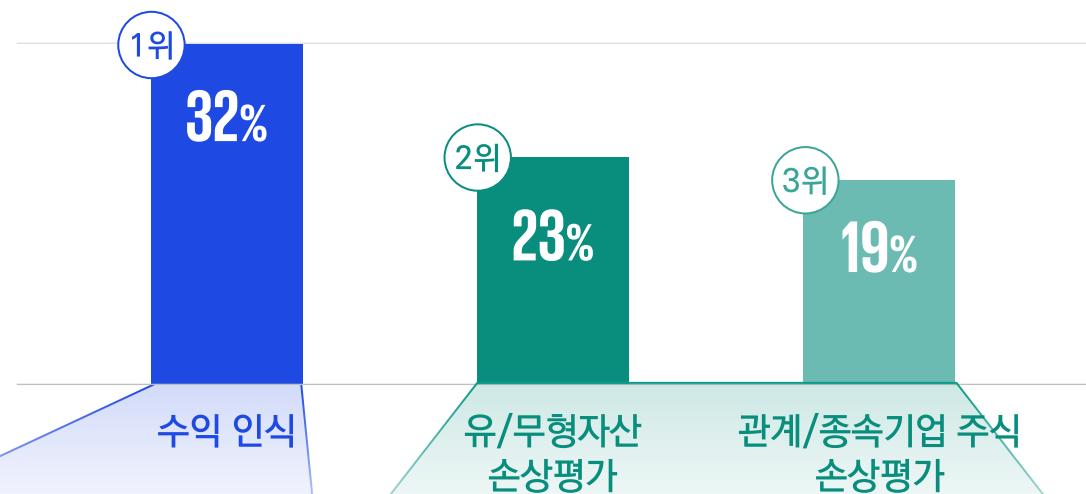
외부감사인	감사계획에 반영할 KAM 선정 • 전기 재무제표 감사 이슈 파악 • 당기 회사 현황 및 산업 이슈를 고려하여 KAM 선정	KAM 감사 및 유의사항 보고 • 감사절차 진행 및 경과 보고 • 중요한 사건 발생시 KAM 추가 선정여부 등 고려	KAM 감사 결과 보고 • KAM 감사 결론 및 결과 보고 •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검토 • KAM 선정 사유와 감사계획 질의 •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KAM 선정사유 검토	감사인 KAM 감사활동 지원 • KAM 감사절차 진행경과 검토 • 감사절차 수행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감사업무 종료 보고 자료 검토 • KAM 감사결론 및 결과 검토 • 감사보고서 및 관련 주석 공시 내용 확인

FY2023 KOSPI200 핵심감사사항 현황

(1) 평균 개수



(2) 순위



수의 인식을 위한 5단계 수의 인식 모형

-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의 인식

자산 손상 검토 흐름

- 1단계 손상 징후가 있는 자산의 식별
- 2단계 손상이 인식되어야 하는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선정
- 3단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선정
- 4단계 회수가능금액과 장부금액 비교

재무제표 반영 및 주석공시

주요 핵심감사사항 분석

(1) 수익 인식 관련 감사(위원회)의 유의사항

	유의사항	감리지적사례 및 주요 거래 예시
01  계약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체결하거나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에 따라 단일계약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는 설비의 납품과 설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지만 설치 후 검수 완료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 되므로 단일 계약으로 보아 설치 후 검수 완료 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익을 인식
02  수행의무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수행의무에서 거래의 주체로서 재화나 용역 자체를 직접 제공(본인) 하는가? ✓ 아니면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대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사는 재화를 수입하여 고객 납품 시, 재고 보관책임이 없고 판매 물량 및 가격 결정권이 없는 주선인(대리인)으로서 총액이 아닌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 인식
03  거래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과의 거래에서 수익금액 측정 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할인, 판매 장려금 등)가 차감되는 등 상업적 실질이 반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사가 고객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대금에서 차감해서 회계처리해야 함
04  거래가격 수행의무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수행 의무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재화나 용역의 수익금액은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사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일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판매대금을 개별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단말기는 인도 시점에, 통신서비스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05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률 산정이 적절한가? ✓ 계약 금액 증액이 계약 당사자간 승인된 이후 진행률에 반영되었는가? ✓ 총예정원가의 증액은 적시에 반영되어 진행률에 산정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사는 계약당사자 간 최종 승인되지 않고 협의 중인 사항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수익 과대계상 ✓ F사는 총예정원가 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수익을 과대계상

주요 핵심감사사항 분석

(2) 손상 검토 관련 감사(위원회)의 유의사항

	유의사항	감리지적사례 및 주요 거래 예시
01  손상 징후가 있는 자산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다양한 정보원천을 토대로 손상징후를 식별하고 있는가? ※ 주가, 공시지가, 적자 발생 지속, 자산 진부화, 시장·기술·법률 관련 외부환경 변화 등 ✓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 등은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손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사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H의 PBR¹⁾이 1미만(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에 미달)하여 손상징후가 있는 자산으로 식별
02  손상 인식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자산에 대한 손상인식이 적절한가? ✓ 그렇지 않다면 손상 징후가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독립적인 현금창출을 하는 사업단위²⁾를 인식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사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 2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는데 각 사업부문별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사업부문별 내부이전가격은 해당 활성시장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각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선정
03  회수가능금액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의 처분을 고려한 순공정가치의 측정은 적절한가? ✓ 사용가치³⁾ 측정 시 적용된 가정이나 방법은 적절한가?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사는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부문에 대해 실적하락의 원인 분석 없이 낙관적인 가정 하에 매출 추정액을 반영하였고 중단사업의 매출 추정액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용가치를 과대 계상하고 손상차손을 미인식함
04  회수가능금액과 장부금액과의 비교 재무제표 반영 및 주석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손상 검토 결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회사의 손상 검토 내용이 주석사항에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금액 > 회수가능금액 → 손상차손 인식하여 장부금액 감액 ✓ 장부금액 < 회수가능금액 → 손상차손 미인식 ✓ 손상 검토의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공시

1) PBR(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로 PBR이 1보다 작은 경우 통상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액에 대한 시장 평가액이 주주자본을 하회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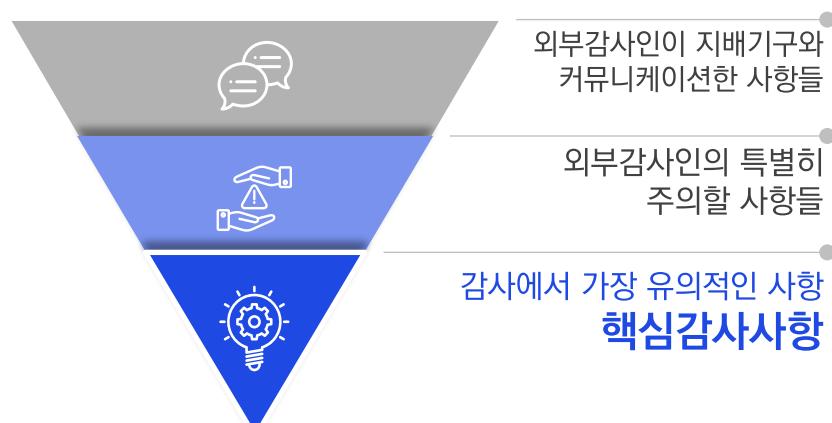
2) CGU(Cash Generating Unit),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 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

3) 사업계획에 따라 자산의 계속 사용하고 내용연수 종료 후에 처분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I. 핵심감사제도

1. 핵심감사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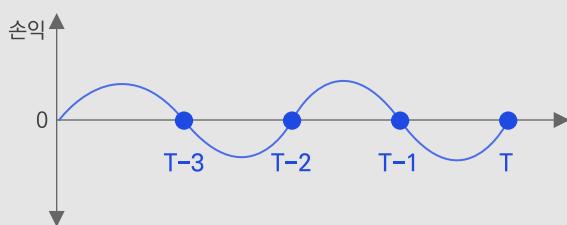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회계감사기준서 701)란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감사(위원회))에 해당, 이하 감사(위원회)로 통일)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 핵심감사제도의 목적은 당기 재무제표 감사의 유의적인 사항을 식별하여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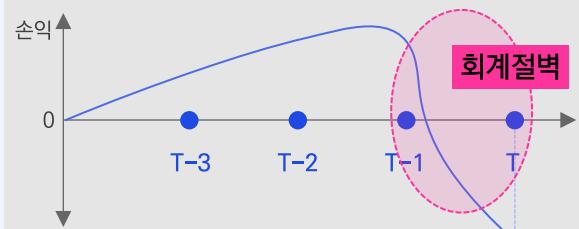
핵심감사제는 왜 수주산업에 먼저 도입되었을까?

핵심감사제도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추정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⁴⁾’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감독당국은 회계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감사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이후 핵심감사제도는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되었다.

(1) 원가상승의 주기적 인식



(2) 누적 원가상승분 일시 인식



- 핵심감사제도 적용대상은 현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전체(코넥스 제외)이다.
 - 다만,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수주산업 감사 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이 적용되므로 상장회사 본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면 핵심감사제도 적용대상이다.

4) 회계절벽이란 장부상 이익을 내던 기업이 갑자기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경영진 교체 등 특정시점에 손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회계절벽 그 자체로 회계부정은 아니고 합리적인 추정과 적시성 있는 회계처리 반영이라면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해당한다.

2. 핵심감사제도에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제와 관련하여, 핵심감사사항 선정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며,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감사절차 단계별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01. 감사 계획

02. 감사 수행

03. 감사 종료

외부감사인	<p>감사계획에 반영할 KAM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재무제표 감사 이슈 파악 • 당기 회사 현황 및 산업 이슈를 고려하여 KAM 선정 	<p>KAM 감사 및 유의사항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 감사절차 진행 및 결과 보고 • 중요한 사건 발생시 KAM 추가 선정여부 등 고려 	<p>KAM 감사 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 감사 결론 및 결과 보고 •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	<p>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 선정 사유와 감사계획 질의 •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KAM 선정사유 검토 	<p>감사인 KAM 감사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 감사절차 진행경과 검토 • 감사절차 수행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고려 	<p>감사업무 종료 보고 자료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 감사결론 및 결과 검토 • 감사보고서 및 관련 주석 공시 내용 확인

3. 핵심감사사항 선정 시 외부감사인 고려사항

- 감사기준서 701 문단 A29는 핵심감사사항 결정 시 외부감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감사기준서는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위원회) 또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① 재무제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특히, 재무제표에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 ② 회계정책의 성격, 또는 동종산업 내 비교를 통한 경영진의 적합한 회계정책 선택에 수반되는 복잡성 및 주관성
- ③ 해당 사항 감사절차 및 결과 평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 노력
- ④ 해당 사항과 관련된 통제의 미비점이나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그 심각성과 중요성
- ⑤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입수의 어려움

4. 핵심감사사항 선정 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감사(위원회)는 회사 사업과 경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핵심감사사항이 재무제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질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외부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이 회사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처리 영역인가?

5. 2023년 KOSPI200 상장회사의 핵심감사사항 현황

- KOSPI200 기업⁵⁾의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소제목별 주제를 기준으로 한 1사당 핵심감사사항 평균 기재 개수는 1.69개⁶⁾로 나타났다.
- 또한 각 사가 공시한 핵심감사사항 주제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⁷⁾	주제	개수	비율
1	수익 인식	109	32.3%
2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77	22.9%
3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	64	19.0%
4	충당금(충당부채) 평가	20	5.9%
5	재고자산 평가	13	3.9%
6	금융자산/부채 가치평가	12	3.6%
7	사업결합 회계처리	11	3.3%
8	보험부채 평가	9	2.7%
9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7	2.0%
-	기타 ⁸⁾	15	4.4%
합계		337	100%

-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상위 주제인 수익 인식과 손상 검토 회계처리에 대해 소개하고 감사(위원회) 입장에서의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5) 상세내용 별첨 참고

6) CRITICAL AUDIT MATTERS A 3-YEAR REVIEW 2020 – 2022, Ideagen, Audit Analytics, 2024.01에 따르면 2022년 사업연도의 미국 SEC 상장 법인의 1사당 핵심감사사항 평균 개수는 1.34개이며 FY2022 미국의 핵심감사사항 상위 5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순위	주제	비율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4%
2	사업결합	9%
3	영업권	9%
4	신용손실에 따른 충당금	8%
5	재고	4%

7) 삼정KPMG ACI Analysis

8) 감가상각 개시시점,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변동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원가(비용) 인식 등

II. 주요 핵심감사사항 분석

1. 수익 인식

1)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 수익 인식 주제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인식한 경우의 상세분류 현황⁹⁾은 다음과 같다.

수익 인식 상세 분류	개수	비율
수주산업 수익 인식 ¹⁰⁾	56	51.4%
특정 회계기간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인식 (기간귀속)	21	19.3%
실제 발생한 사건을 기록 (발생사실)	11	10.1%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8	7.3%
판매장려활동	5	4.6%
기타 ¹¹⁾	8	7.3%
합계	109	100%

-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의 5단계 인식모형은 다음과 같다.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9) 삼정 KPMG ACI Analysis, 본 보고서 p9 상 수익 인식 상세분류 내용

10)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주산업 감사 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에서 5개의 핵심감사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①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②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③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④ 미청구공사금액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 ⑤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11) 이연수익, 특수관계자 매출, 부정 등

① 계약 식별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1. 수익 인식

1)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① 계약 식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단계로 계약결합과 변경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절차이다.
- 복수의 계약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인식한다. 복수의 계약이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체결되었거나 한 계약의 지불 대가가 다른 계약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본다.

[감리지적사례¹²⁾로 보는 계약 식별의 중요성]

A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하며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년, 설치용역은 x2년에 완료하였음. 계약서 상 설비는 설치 제공 후 검수 완료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 회사는 설비 납품을 완료한 x1년과 설치용역을 완료한 x2년에 각각 수익을 인식하였음.

계약서상 설비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권리가 이전되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어 단일 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는 설치 완료시점(x2년)에 설비의 납품 및 설치에 대한 수익을 모두 인식해야 함.

예시



다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약 식별의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조건과 거래 관행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 인식의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12)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4.6.14

① 계약 식별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1. 수익 인식

1)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② 수행의무 식별

■ 수행의무의 식별 및 구분 여부

- 다수의 수행의무 존재 시

➤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에 다수의 수행의무(재화 또는 용역)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식별할 것인지 혹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볼 것인지 결정한다.

- 본인 대 대리인(수익의 총액 vs 순액 인식)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하는데 기업이 거래의 주된 책임자인지 혹은 단순히 거래의 주선만을 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거래의 주된 책임자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거래의 주체(본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한다. 반면 단순히 거래의 주선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한다.

➤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의 주체(즉, 본인에 해당)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음
-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하기 전까지 재고위험이 기업에 있음
- ③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기업에 있음

[감리지적사례¹³⁾로 보는 수익의 총액·순액 인식의 중요성]

B사가 육류를 수입하여 甲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육에 대해 ① 재고보관책임이 甲사에 있고, ② B사가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③ 甲사가 국내 수요에 따라 B사에 수입 물량과 가격을 정해주는 등 B사의 수행의무는 동 거래를 주선하는 데 불과하므로 B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수익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예시



구분	수익 인식 방법	수익 인식 금액
올바른 회계처리	순액 인식	100-70=30
회사의 회계처리	총액 인식	⚠ 100 수익 과대계상

13)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2022.6.27



1. 수익 인식

1)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③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 전체 거래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장려금, 성과보너스, 위약금, 쿠폰, 상품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인해 거래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기존 거래와 별도로 구별되어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감리지적사례¹⁴⁾로 보는 거래가격 산정의 중요성]

-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업체 C사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약품 판매대금 10,000원 당 도매상에 판매장려금 1,000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자.
 -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1,000원을 판매거래와의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아서 별도로 구별할 수 없을 때, 해당 판매장려금을 비용(수수료)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10,000원에서 판매장려금 1,000원을 차감함. 따라서 9,000원을 거래가격, 즉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구분	수익 인식 방법
올바른 회계처리	수익 $10,000 - 1,000 = 9,000$
회사의 회계처리	⚠️ 수익 10,000 / 비용 1,000 각각 인식

수익 과대계상

14) 금융감독원, 2023년도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4.05, FSS/2405-01 예시 가공

① 계약 식별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1. 수익 인식

1)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고객에게 다수의 수행의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각각의 수행의무에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거래가격 배분]

- D사는 600원인 휴대폰 기기와 매월 50원(24개월 간 총 1,200원)인 통신 서비스를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각 재화와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면 총 1,800원이지만 패키지로 구매 시 300원이 할인된 1,500원으로 책정됨.
- 1,500원의 패키지 금액을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에 각각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배분해야 함.
 - 거래가격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이유는 수행의무의 성격에 따라 수익의 인식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구분	패키지가격	개별 판매가격 비례배분	배분 금액	수익 인식 시기
휴대폰	1,500원	1,500 × $\frac{600}{1,800}$	500	재화가 인도될 때 일시 인식
통신 서비스		1,500 × $\frac{1,200}{1,800}$	1,000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 (24개월) 기간에 걸쳐 인식

[금융회사의 인수·금융서비스에 대한 거래가격 배분]

- X사는 인수·금융 서비스¹⁵⁾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계약금액 내에 다양한 수행의무가 식별됨. 수행의무는 인수 및 주선업무, 금융자문 업무(대출 참여, 대출 주선 등), 자산관리 업무, 매입계약 업무 등으로 구별됨.
- 인수 및 주선업무는 일시에(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되며 금융자문 업무 등은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됨.
 - 각각의 수행의무별로 수익인식 금액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15)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ing)이란 인수합병(M&A)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권사에도 허용됐다.



1. 수익 인식

1) 5단계 수익 인식 모형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 수행의무의 성격에 따라 한 시점(예: 인도시점 또는 검수완료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ex. 청소 용역)
 - ② 자산을 만들거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고객이 자산을 통제(ex.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 ③ 만든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 진행기준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종계약금액에서 수행의무의 진행정도(진행률)에 따라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text{당기수익} = \text{계약금액} \times \text{진행률}^{16)} \left(\frac{\text{실제발생원가}}{\text{총예정원가}} \right)$$

- 진행률에 따라 측정된 수익과 고객에게 청구한 대금과의 차이를 계약자산이라고 하며 계약자산 금액이 클 경우 자산의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손실충당금이 적절히 측정되어야 한다.

$$\text{계약자산} = \text{진행률에 따른 수익} - \text{대금 청구 금액}$$

(회계상 수익) - (회계상 매출채권)

[진행기준 수익 인식의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시, 추정에 대한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각 요소별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함.

요소	왜곡표시 사례
① 계약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 간 최종 승인되지 않고 협의 중인 사항을 계약금액 증액으로 진행률에 반영 • 지체상금 등 변동대가를 계약금액에 미반영
② 실제발생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금을 공사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발생원가에 포함 • 타 사업장의 원가를 해당 공사의 원가로 대체하여 진행률에 반영 • 공사계약 전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인식
③ 총예정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총예정원가에 미반영 • 별도의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예정원가를 관리하면서도 회계 프로그램에는 총예정원가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음
④ 계약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률에 따른 수익금액과 대금청구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손실충당금의 과소 설정으로 인한 자산 과대 계상

16) 발생원가 기준은 하나의 예시이며 진행률은 산출법이나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측정 가능하다.

1. 수익 인식

2) 수익 인식 관련 감사(위원회)의 유의사항

 01 계약 식별

 02 수행의무 식별

 03 거래가격 산정

 04 거래가격
수행의무 배분

 05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계약의 경제적 실질 반영

- 복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체결하거나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면 단일계약으로 처리

수행의무 내 본인·대리인 분석

- 기업은 수행의무에서 거래의 주체로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 (본인) 하는가?
- 아니면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대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차감 고려

- 고객과의 거래에서 수익금액 측정 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할인, 판매장려금 등)가 차감되는 등 상업적 실질이 반영되어 있는가?

거래가격 배분의 적절성

- 계약 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수행 의무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재화나 용역의 수익금액은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진행률 수익 인식 검토

-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률 산정이 적절한가?
- 계약금액 증액이 계약 당사자간 승인된 이후 진행률에 반영되었는가?
- 총예정원가의 증액은 적시에 반영되어 진행률에 산정되는가?

2. 손상 검토

1) 자산 손상 검토 흐름

- 자산 손상 검토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산 손상 검토에 대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예시

1단계

지속적인 적자 발생 또는 PBR < 1 미만으로 손상 징후 식별

2단계

손상을 인식하는 대상(손상원인)이 개별 기계장치 혹은 사업부 전체인지 확인

3단계

시장에서 처분할 경우의 가치(순공정가치)와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 사용할 경우의 가치(사용가치)를 추정하여 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선정

4단계

회수가능금액 < 장부금액일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주석사항 공시

① 손상징후 식별

② 손상 인식 대상 선정

③ 회수기능금액 측정

④ 재무제표 반영

2. 손상 검토

1) 자산 손상 검토 흐름

① 1단계: 손상 징후가 있는 자산의 식별

-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할 때의 주요 정보원천¹⁷⁾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할 경우 손상 검토 대상으로 고려한다.

정보원천	징후 예시
(1) 자산 가치의 유의적 하락을 나타내는 관측 가능한 징후	공시지가 등의 시세 하락
(2)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자산의 회수기능액이 중요하게 감소 ¹⁸⁾	기준금리 상승
(3)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큼	PBR < 1
(4) 자산이 진부화 ¹⁹⁾ 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 존재	기밀 자산실사 결과 검토
(5) 자산의 경제적 성과 하락에 대한 내부보고	영업이익 등 성과의 지속적 하락

-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회원권) 등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이하 PBR)은 주가를 기업의 장부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PBR이 1보다 작은 경우 통상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액에 대한 시장의 평가액이 주주자본을 하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PBR(Price Bookvalue Ratio)

PBR이 1 미만?

$$PBR = \left(\frac{\text{시가총액}}{\text{기업의 순자산(자산-부채)}} \right)$$



참고

한국 기업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PBR, ROE, PER 등이 낮은 것이 현실임. 최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로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국 증시의 도약을 추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됨.

주요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PBR (2014~2023)²⁰⁾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와의 적극적인 참여(검토 또는 승인)를 권장함.

17) 기준서 1036 자산손상, 문단 12 참고

18) 본 보고서 p20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식에 할인율이 분모에 있으므로 상승 시 회수기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수 있다.

19) 자산이 기술 발전, 시장 변화, 또는 기타 요인들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거나 쓸모없게 된 상태

20) 금융위원회,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4.02.26)



2. 손상 검토

1) 자산 손상 검토 흐름

② 2단계 : 손상이 인식되어야 하는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선정

- 손상 검토의 원칙적인 추정 단위는 기계장치, 건물 등의 개별 자산이지만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현금창출단위 (Cash Generating Unit, CGU)로 인식한다.
 - 현금창출단위란 회사 내 자산 그룹이 독립적으로 현금 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단위이다. 즉, 기업에서 분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다른 부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왜 현금창출단위로 손상을 인식할까?

현금창출단위로 손상을 인식하는 이유는 자산의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산은 개별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과 결합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계는 보통 완제품을 만들 수 없으며 여러 기계가 모인 공정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한다. 손상 검토를 인식할 때의 주요 요소인 사용가치의 정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합이므로 정확한 손상 검토를 위해서는 현금흐름의 창출단위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현금창출단위 선정 사례]

- 회사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나누어 2개의 사업 부문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부문별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사업부문별 내부이전가격은 해당 활성시장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각 사업부문을 현금창출사업단위로 선정한다.
- 회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개별 매장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더라도 독립적인 현금창출이 가능하므로 각 매장을 현금창출사업단위로 식별한다.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손상 검토 단위의 차이가 있을까?

- 지배회사 K가 종속기업 M를 보유하고 있고 종속기업 M에서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손상 검토 단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지배회사 K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M를 손상 검토 단위로 선정한다.
 - 지배회사 K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지배기업 K의 사업부문과 종속기업 M의 사업부문이 포함될 수도 있어, 손상 검토 단위가 별도재무제표와 달라질 수 있다.

① 손상 징후 식별

② 손상 인식 대상 선정

③ 회수 가능금액 측정

④ 재무제표 반영

2. 손상 검토

1) 자산 손상 검토 흐름

③ 3단계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금액으로 선정

- 자산의 회수 가능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은 처분을 통한 순공정가치 측정과 계속적인 사용을 가정한 사용가치 측정이 있다.

$$\text{회수 가능금액} = \text{Max}(① \text{ 순공정가치}, ② \text{ 사용가치})$$

①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순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가자 간의 정상적인 처분을 통해 지불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다.

② 사용가치 = 현재가치로 환산된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 = $\sum_{\text{할인율}}^{\text{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내용연수 종료 후 처분을 통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 사용가치의 경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추정과 판단 등이 수반된다.

[감리지적사례²¹⁾로 보는 사업계획의 중요성]

- J사는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부문에 대해 실적하락의 원인 분석 없이 낙관적인 가정하에 매출 추정액을 반영하였고 중단사업의 매출 추정액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용가치를 과대 계상하고 손상차손을 미인식함.
 - 작성된 사업계획이 경영진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검토 등을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4단계 :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금액을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장부금액 > 회수 가능금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
- 장부금액 < 회수 가능금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손상 검토 내용을 주석에 반영

$$\text{자산손상 회계처리} = \text{Min}(\text{장부가액}, \text{회수 가능금액})$$



21) 금융감독원,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내용 가공

2. 손상 검토

2) 손상평가 관련 감사(위원회)의 유의사항



III.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참고사항

1. 핵심감사사항과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 과정에서 운영되는 내부통제이므로 핵심감사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호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부통제 중에서도 경영진 검토 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 MRC)와 핵심감사사항은 그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 경영진 검토 통제는 중요한 회계추정, 가정 및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 수행 내역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경영진 검토 통제가 존재한다면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 외 핵심감사사항과 연관된 회사의 내부통제활동이 실효성 있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회계이슈 중점심사항목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고 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시, 매년 발표되는 중점심사항목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다.

[연도별 금융감독원 발표 중점심사항목]



IV. 별첨

1.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KOSPI200 기업(2024. 05. 02 기준)이며 출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2023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이다.

업종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총 합계
건설업	1	4	5
금융 및 보험업	2	37	39
도매 및 소매업	4	12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1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2
운수 및 창고업	0	6	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	2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	5
정보통신업	1	10	11
제조업	37	73	1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1	1
총합계	52	148	200

2. 모범 사례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년²²⁾ 연결감사보고서 중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보다 충실히 기재도록 유도하고 정보이용자가 외부감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하였다.
- 모범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①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이유와 ② 감사 대응 방법에 대해 충실히 기재하여 이해도 제고 및 감사 효과성 파악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모범사례를 통해 핵심감사제의 복잡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감사 방법 및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모범 사례	업종	자산 규모
[사례 1] 용역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서비스업	자산 2조원 이상
[사례 2]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	제조업(수주산업)	자산 2조원 이상
[사례 3]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사례 4] 관계기업투자 손상평가	지주회사	자산 5천억원~2조원

22) 본 보고서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성 제공을 위해 이를 2023년 공시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사례 1

용역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서비스업, 자산 2조원 이상)

운송주선용역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에 대한 검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사는 운송주선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인식된 운송주선 매출은 XXX,XXX백만원입니다.

운송주선용역은 주로 국가 간 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발생하며,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수행의무가 존재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의 이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 인식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회사의 운송주선용역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의 판단 오류나 경영진의 의도에 따른 운송용역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수익 인식 회계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 운송주선용역 관련 통제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 당기 중 발생한 매출 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하여 발생증빙과 회사의 수익 인식시점 비교 대사
- 보고기간말 전후에 발생한 수출 매출거래의 수익 인식시점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추출한 표본거래에 대한 문서검사
-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중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에 대한 재계산

사례 2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 (제조업(수주산업),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주석X(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주석X(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효과, 수주가정의 변동 및 개별호선의 인도일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 등의 변동위험에 따른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은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됩니다.

또한 주석X(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지연배상금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이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감사 절차
 - 계약조건 검토
 - 유사 선종 선가의 유의적 하락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계약해지 조건에 대한 검토
 - 발주처 재무상태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
- 경영진이 총 계약원가 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평가
- 총 계약원가의 각 구성요소(재료비 물량 정보, 노무시간 정보 등)에 대한 현업부서 추정자료와의 대사 및 합리성 검토
- 유사 프로젝트 총 계약원가와의 비교 및 합리성 검토
- 보고기간 후 발생원가의 총 계약원가의 변경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회사의 프로젝트별 원가투입 및 대체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평가
- 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프로젝트별 원가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 경영진이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평가
- 공사변경과 관련된 발주처의 계약금액 변경 승인의 근거 서류에 대한 시사절차
- 프로젝트별 지연배상금 조건 및 계약상 인도일, 주요 Milestone에 대한 계약상 조건 검토
- 지연배상금 발생 예상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인도일과 계약상 예정 Milestone 달성을 위한 비교 검토
- 경영진의 지연배상금 추정 근거에 대한 합리성 검토

사례 3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영업권 손상평가

연결재무제표 주석 X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영업권 장부금액은 XXX,XXX백만원으로 연결총자산의 X.X%입니다.

연결회사는 영업권의 손상평가를 위해, 향후 0.00년 동안의 재무예측과 잔존가치가 반영된 사용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현금창출단위들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이 모형의 주요 가정은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장기성장률 및 할인율이 포함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을 평가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사용가치 추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등의 주요 가정의 결정시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며, 경영진의 편향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우리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평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중 금액적 유의성과 최근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OO사, OOO종속기업(다수의 국가에 소재)의 O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 손상평가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 손상평가 관련 연결회사 절차 및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평가
-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추정에 적용된 가치평가 모형의 수학적인 정확성을 확인
-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경영진에 보고 승인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
- 추정치에 낙관적인 가정이 포함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당기 실제 성과와 전기 추정을 비교
- 사용가치 추정에 참여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평가
-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
 - 현금창출단위의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및 투자활동 예측이 과거성과, 시장상황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
 - 경제 및 산업 예측과 장기성장률을 비교
 - 관측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계산된 할인율을 연결회사가 적용한 할인율과 비교
-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 과정에서 식별된 비합리적 가정을 조정반영한 현금창출단위 사용가치의 독립적 산출 및 동 산출액을 기준으로 한 영업권 손상여부 확인
- 주요 가정의 변경이 손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할인율, 영업이익률 및 영구성장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평가

사례 4

관계기업투자 손상평가 (지주회사, 자산 5천억원~2조원)

(1)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 검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주석 X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은 XXX,XXX백만원이며, 이 중 XXXXX(주)의 장부금액은 XXX,XXX백만원으로 회사 자산총계 및 관계기업투자의 각각 XX.XX%와 XX.XX%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관계기업투자의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인해 공정가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유의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습니다. 당기 인식한 관계기업 주식 손상차손은 XX,XXX백만원입니다.

회사는 해당 관계기업투자의 손상징후에 대하여 할인된 현금흐름법 등에 근거한 사용가치 계산을 활용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형의 가정에는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장기성장률 및 할인율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사용가치는 할인율, 성장률 및 미래현금흐름 예측 등 회사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치를 수반하므로 우리는 회수가능액 검토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관계기업투자 회수가능가액 검토 프로세스 관련 통제의 이해 및 평가
- 경영진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한 가치평가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
-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경영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
- 추정치에 낙관적인 가정이 포함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당기 실제 성과와 전기 추정을 비교
-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및 성장률 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
- 주요 가정의 변경이 손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행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평가

Contact us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변영훈

감사부문 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김민규

부대표(ACI 리더)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ACI 부리더)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이민형

이사
T. 02-2112-7854
E. minhyunglee@kr.kpmg.com

노유경

책임연구원
T. 02-2112-7883
E. youkyunglo@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김다슬

선임연구원
T. 02-2112-3305
E. daseulkim@kr.kpmg.com

박수진

선임연구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